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전체 재해의 약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시설·장비가 부실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부실문제 발생하므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제16조의3).

나.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제29조의4).

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으로, "자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받아야"를 "이수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제32조의2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전단 및 후단 중 "제31조의2제1항"을 각각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5조·제16조"를 "제13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으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제72조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1항·제3항"을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으로, "제1호의 자"를 "제1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2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